

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8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- 가. 상위 근거법령인 「호적법」이 폐지됨 (시행일 : 2008. 1. 1)
- 나. 종전의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·읍·면의 장이 이를 관장하는 자치사무로 되어 있었으나, 2008. 1. 1일부터 시행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상위법령에 근거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 폐지 (본칙)
- 나. 기존의 호적제도에 기초한 호적과태료의 부과·징수가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대체되고,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국가사무로 관장됨에 따라 그 과태료의 부과·징수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며 본 조례는 폐지함

3. 폐지근거

「호적법」 폐지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 (2008. 1. 1)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나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

· 공고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-463호(공고심사필 제485호)

· 기간: 2009.06.18 ~ 2009.07.08 (제출된 의견 없음)

(2)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